

## 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

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”

### ☞ 지원대상 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
\* 지원제외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### ☞ 지원요건

- **기업요건**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

- ① 현행 정년을 연장(정년연장)
- ② 현행 정년을 폐지(정년폐지)
-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(재고용)

- **근로자요건**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 중인 근로자

\* 다만,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,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,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거주(F-2)·영주(F-5)·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, ④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,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),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,860,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(해당월에 지원제외)

### ☞ 지원수준 및 기간

-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
-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('20.1.1)로부터 최대 2년

### ☞ 신청절차
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